#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3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강일·김남근·김남희

김우영 · 김현정 · 민병덕

박상혁 • 박정현 • 염태영

이용우 · 정성호 · 정준호

허성무ㆍ허 영ㆍ황명선

황운하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계엄의 해제 요구 등을위한 국회 및 국회의원의 활동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엄사령관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 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는 한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제6항 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부장관은 제2항"을 "제2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를 "국무총리가 국 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로 한다.

이 경우 의결은 국무회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2조제5항 및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제5조제1항 중 "심의를"을 "심의ㆍ의결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심의를"을 "심의ㆍ의결을"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회의 입법사무는 계엄사령관의 관장 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회 및 국회의원은 입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엄사령관의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拘禁)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언론·출판·집회 또는 결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입법사무를 관장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게는 특별조치권을 발령할 수 없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를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계엄의 해제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 중 "날부터"를 "즉시"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 집회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5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u>심의·의결을</u>
<후단 신설>	이 경우 의결은 국무회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⑥ <u>제2항</u>
<u>부장관은 제2항</u>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u>국무총리를 거쳐</u> 대통령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
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있다.	<u>청취하여</u>
<u>&lt;신 설&gt;</u>	제4조의2(계엄 선포의 무효) 제2
	조제5항 및 제4조에 따른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그 효력이 없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
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	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	
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 ④ (생 략)
-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 감독)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② (생 략) <신 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 ② (생 략) <신 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포・구금(拘禁)・압수・수색・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나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언 •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 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겨		 	 	 _	_
<b>一一</b> 三	근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심의 • 의결을-----.

-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회의 입법사무는 계엄사 령관의 관장 범위에서 제외한 다.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회 및 국회의원은 입법사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엄사 <u>령관의 지휘·감독을</u> 받지 아 니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장 없이 체포・구금(拘禁)하거

론・출판・집회 또는 결사----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② (생략)
  -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 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u>국무총</u> 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u>날부터</u>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생 략)

제14조(벌칙) <신 설>

	하며,
	입법사무를 관장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게는 특별조치권을
	발령할 수 없다.
제	11조(계엄의 해제)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제2조제2항</u>
	리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	11조의2(계엄의 해제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
	화) ① <u>즉시</u>
	② (현행과 같음)
제	14조(벌칙) ① 제11조의2를 위
	반하여 국회의 집회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 ④ (생 략)	<u>②</u> ~ <u>⑤</u> (현행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